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0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기덕, 김인제,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이민옥,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가족돌봄청년은 평균 46.1개월 간, 주당 21.6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75.6%가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년 또래 대비 7배 이상의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경제적, 정신적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정서적 불안을 일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족돌봄 의무를 지게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황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이에 14세 미만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도 지원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조손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제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나이 규정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가족돌봄청년”이란”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으로, “14세 이상 34세”를 “34세”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4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족돌봄청년의”를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6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제10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가족돌봄청년</u>”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u>14세 이상 34세 이하</u>의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u>”이란 ----- ----- ----- ----- <u>34세</u> ----- -----.</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가족돌봄청년</u>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가족돌봄청년</u>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u>----- ----- ----- -----.</p> <p>② ----- <u>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u> ----- -----</p>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

② -----
-----.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생략)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
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
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
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6.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제7조(지원사업) ① ----- 가족
돌봄청소년 및 청년-----

--.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생략)

8.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7. (현행과 같음)

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

----- 가족돌봄청소년

년 및 청년 -----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

문서번호

20231015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최기찬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5.

회신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등의 청년을 청소년 및 청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등의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 대한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의 기준으로,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가정하여 추가 소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붙임 참조)의 지원대상 규모도 초기에 파악하기 쉽지않아 용역을 통해 14세~34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9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계 추진계획

□ 추진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22.10.~'23.3.)
-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11.)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지원계획 수립('23.7.)
-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상담 개시('23.8.)
- 가족돌봄청년 지원 서울시-6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23.8.)

□ 추진계획

- 가족돌봄청년 지원연계 추진체계

서울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효림의료재단	희망친구기아대책 초록우산 (주)365mc	전담기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구 지정·운영 · 지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가족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5명(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주거·학습 의료비 등 지원 · 태블릿PC 기기 및 2년 요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희망친구기아 대책, 초록우산 지원 연계 · 대상자 모집·선정, 결과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림의료재단, (주)365mc 지원 연계 · 대상자 모집·선정, 결과보고 등

- 지원내용

- (대상자)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4~34세 가족돌봄청년
 - ※ 2023.9.20. 공고일 기준 1988.9.21. ~ 2009.9.20. 출생자
- (지원규모) 총 5억원 규모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기간) 9.20.(수)부터 순차적으로 기관별 대상자 선정·지원

○ 지원기관별 세부추진계획(안)

지원기관	LH	기아대책	초록우산	효림의료재단	㈜365mc
지원항목	임대주택 입주자격(9호)	생계·주거·학습· 의료·자조모임비	생계·주거·학습· 의료비	돌봄대상자 의료·간병서비스	태블릿PC (통신요금 2년 포함), 의료비
지원규모	9가구	연 2억원(50여명)	연 2억원(50여명)	5명	연 1억원(130여명)
지원대상	14~34세	14~34세	14~18세 (14세 미만 가능)	14~34세	14~34세
소득조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제적 위기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주체	개인 신청	개인 신청	기관 추천	협의후 결정	협의 후 결정
신청기간	9.20.(수) ~10.6.(금)	9.20.(수) ~10.6.(금)	9.20.(수) ~11.30.(목)	10월 중	올해 하반기 ~ 내년 상반기
결과발표	전담기구(11월)	전담기구(10월)	초록우산(상시)	차후 공고	차후 공고

※ 기관별로 세부사항 협의하여 결정, 주요내용 변경 가능

자료 : 2023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21923 가족돌봄청년 지원연계 추진계획 발췌